김포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의 안 번 호 제3402호 제출년월일 2024. 2. 23. 제 출 자 김 포 시 장

1. 심사경과

○ 본 안건은 2024년 2월 23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○ 도시의 역사·사회·문화적 정체성 등을 반영한 강력한 도시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여 시민의 자부심을 높이는 데에 그 역할을 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도시브랜드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시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(안 제4조~제6조)
- 라. 브랜드강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제17조)

4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김포시의 도시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안된 사안으로, 조례 시행 이후에 추진될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그에 따른 기대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.
- 안 제14조(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)에서는 '관계전문가 의견 청취'에 관한 사항과 '관계기관·단체에 대한 자료 및 의견 제출 요청'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문의 제목이 이를 포괄하지 못하고 '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'만을 표시하고 있으니 규정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표현 (ex.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)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※ [참고] 「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」(법제처) - 조문의 제목 표시

한 조문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핵심적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대표성 있는 단어나 어절을 이용하여 제목을 정하고, 그 여러 가지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정하기 곤란하면 "(...등)" 이라고 표시하여 그 제목이 그 밖의 다른 내용까지 함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.